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제도 신청전 유의사항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금년도에 한해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상환연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활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계좌**를 본 특례지원을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이 확정되면 **잔여 거치기간은 소멸되며**, 실행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 거치기간 :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본 제도를 통해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에 유의하여 본 제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본 제도 지원 전 상환스케줄 대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

□ 사업기간 : '25. 7. 30(수) ~ 12. 19(금)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① 분할상환 특례 지원(상환연장 최대 7년 + 1%p 금리감면)은 '2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되면 상환기간 동안 1%p 금리감면 지원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7년)은 지속 운영('25.12.19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①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 되는 소상공인	<신규지원자> ■ 상환기간 연장 · 가중평균상환기간+7년 ■ 금리 감면 · 가중평균적용금리+가산금리-1%p
		<상환연장(최대5년) 기 수혜자> ■ 상환기간 추가 연장 · 7년 - 상환연장 지원 받은 기간 ■ 금리 감면 · 기존 금리-1%p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 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신규 지원자> ■ 상환기간 연장 · 가중평균상환기간+7년 ■ 적용 금리 · 가중평균적용금리+가산금리
		<상환연장(최대5년) 기 수혜자> ■ 상환기간 추가 연장 · 7년 - 상환연장 지원 받은 기간 ■ 적용 금리 · 기존 금리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대상채무

- 직접대출 중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

☐ 신청 제한기준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 ❶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❷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❸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중인 경우
- ❹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의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인 경우
- ❺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임차> 경매신청기입등기
- ❻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법인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다음 주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 (2) 최대주주

-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①분할상환 특례 지원(상환연장 7년 + 이자감면 1%p) 또는 ②정책자금 상환연장(7년) 지원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 기금 등 타 채무조정제도 안내

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 선정요건

- '20.4~'25.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항목	기준
매출 감소자	'20년~'23년 中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20.1.1~'23.12.31)에 발생한 타 금융기관의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통합계좌 운용) 복수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상환연장 신청 계좌의 총 잔액을 통합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하나의 대출계좌를 개설
 - * 단, 보유한 직접대출계좌들에 고정금리·변동금리가 혼재된 경우, 고정금리 통합계좌와 변동금리 통합계좌의 2계좌 생성
 - (상환계좌 : 필수) 신청 계좌 중 원리금 상환을 1회 이상 수행한 계좌는 통합계좌에서 제외 불가능
 - (거치계좌 : 선택)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인 계좌는 상환연장 제외 가능. 단, 상환연장 확정 이후 재신청 또는 통합요청 불가

□ 지원내용 : 금리감면

- (적용금리)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 1%p(감면)**

* 가산금리 : 정상계좌(0.2%), 30일 이하 연체계좌(0.4%)

- (감면기간) 연장된 총 상환기간의 만기일까지 적용

상환기간·평균금리 산출 예시

통합전	통합여부	통합후	통합계좌
■ 대출계좌 A - 잔액 : 3백만원 - 잔존만기 : 11개월 - 금리 : 고정 1.5% - 원리금 상환중	필수	■ 거치계좌 제외	■ 고정금리 통합계좌(A+B) - 잔액 : 15백만원 - 평균 상환기간 : 30개월 - 평균 금리 : 1.051% ■ 변동금리 통합계좌(C) - 잔액 : 20백만원 - 평균 상환기간 : 30개월 - 평균 금리 : 기준금리 + 0.6% ■ 상환연장·금리감면 결과 - 평균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연장 ⇒ 114개월 상환 - 평균금리에서 -0.8%p 금리감면 적용 ⇒ 고정금리 0.25%, 변동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0.2%
■ 대출계좌 B - 잔액 : 12백만원 - 잔존만기 : 24개월 - 금리 : 고정 1% - 원리금 상환중	필수		
■ 대출계좌 C - 잔액 : 20백만원 - 잔존만기 : 36개월 - 금리 : 기준금리+0.6% - 원리금 상환중	필수	■ 거치계좌 포함	■ 고정금리 통합계좌(A+B) - 잔액 : 15백만원 - 평균 상환기간 : 34개월 - 평균 금리 : 1.051% ■ 변동금리 통합계좌(C+D) - 잔액 : 50백만원 - 평균 상환기간 : 34개월 - 평균 금리 : 1.225% ■ 상환연장·금리감면 결과 - 평균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연장 ⇒ 119개월 상환 - 평균금리에서 -0.8%p 금리감면 적용 ⇒ 고정금리 0.25%, 변동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0.42%
■ 대출계좌 D - 잔액 : 30백만원 - 잔존만기 : 40개월 - 금리 : 기준금리+1.6% - 거치중	선택 가능		

< 상환기간을 고려한 평균 상환기간·금리 산출 방식 >

- ◆ **계좌 A**가 대출잔액 5백만원, 상환기간 10개월, 가산금리 0.4%,
계좌 B가 대출잔액 20백만원, 상환기간 36개월, 가산금리 1.6%인 경우

- **상환기간 : 30.8개월** * $\frac{\{(10\text{개월} \times 5\text{백만원}) + (36\text{개월} \times 20\text{백만원})\}}{25\text{백만원}}$

- **가산금리 : 1.52%** * $\frac{\{(0.4\% \times 5\text{백만원} \times 10\text{개월}) + (1.6\% \times 20\text{백만원} \times \text{개월})\}}{\{(5\text{백만원} \times 10\text{개월}) + (20\text{백만원} \times 36\text{개월})\}}$

□ **상환연장 기 수혜자(최대 5년)가 신청할 경우**

- (심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시점 기준 심사 진행
- (상환기간 추가) 상환기간 최장 7년 범위 내 연장
 - * 예시: (Case1) 상환기간 5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2년 추가 연장
 (Case2) 상환기간 3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4년 추가 연장
- (금리감면) 이용 중인 직접대출 통합계좌 금리 - 1%p(감면)

상환연장 기 수혜자 상환기간·적용금리 산출 예시

◆ **상환기간 : 최장 7년 범위 내 연장**

- (예시1) 상환기간 3년 연장한 계좌가 재신청시 : 4년 이내 추가 연장

기존 분할상환 기간			추가 요청변경 가능기간
12회차	12회차	12회차	48회차 이내 가능

- (예시2) 상환기간 5년 연장한 계좌가 재신청시 : 2년 이내 추가 연장

기존 분할상환 기간					추가 요청변경 가능기간
12회차	12회차	12회차	12회차	12회차	24회차 이내 가능

◆ **적용금리 : 이용 중인 통합계좌 금리 - 1%p**

- (예시) 기존 통합계좌 금리(3.5%) - 1%p = 2.5%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 선정요건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항목	기준
매출 감소자	전기(월, 분기, 반기, 년 중 택1) 대비 매출액 감소한 경우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중·저신용자 및 부실징후에 해당하는 경우 ①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제도를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상환기간)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기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경우 최대 5년 부여하였으나, 금번 특례지원에 맞춰 7년으로 추가 연장하여 적용

- (통합계좌 운용) 복수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상환연장 신청 계좌의 총 잔액을 통합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하나의 대출계좌를 개설

* 단, 보유한 직접대출계좌들에 고정금리·변동금리가 혼재된 경우, 고정금리 통합계좌와 변동금리 통합계좌의 2계좌 생성

- (상환계좌 : 필수) 신청 계좌 중 원리금 상환을 1회 이상 수행한 계좌는 통합계좌에서 제외 불가능

- (거치계좌 : 선택)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인 계좌는 상환연장 제외 가능. 단, 상환연장 확정 이후 재신청 또는 통합요청 불가

- (적용금리)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 : 정상계좌(0.2%), 30일 이하 연체계좌(0.4%)

□ 상환연장 기 수혜자(최대 5년)가 재신청할 경우

- (재심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여부를 신청시점 기준 심사 진행, 경영애로만 인정될 경우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 (상환기간 추가) 상환기간 최장 7년 범위 내 연장
 - * 예시: (Case1) 상환기간 5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2년 추가 연장
(Case2) 상환기간 3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4년 추가 연장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직접대출 통합계좌 금리 + 가산금리*
 - * 가산금리 : 정상계좌(0.2%), 30일 이하 연체계좌(0.4%)

③ 컨설팅 연계지원

□ 선정요건

-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❶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❷경영지속보다 폐업이 필요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❶경영안정 컨설팅, ❷사업정리컨설팅 지원 연계

- (경영안정) 분야별 전문인력의 1:1 맞춤형 상담을 통한 사업역량 강화(500명)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내 용		지원일수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1일 * 지원자가 선택
지원분야	경영·마케팅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세무·노무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기술	• 상품 및 메뉴 개발 등	

* 컨설팅 신청인 자부담 10% 부여

- (사업정리) 점포철거, 취업·재창업, 세무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재기를 지원(500명)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내용 >

구분	분야	세부지원내용	컨설턴트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인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공인중개사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통	심리치유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회복 지원	심리상담사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직업상담사

※ 상기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치유, 직무·직능, 심리) 중 3개 분야 컨설팅 가능

□ 지원절차

- (선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컨설팅 연계지원 대상 선별
- (동의서) 약정서와 함께 컨설팅사업 연계 정보제공 동의서 요청
* 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확인 알림톡 발송
- (컨설팅 지원) 컨설팅 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가 상담 진행

4 신청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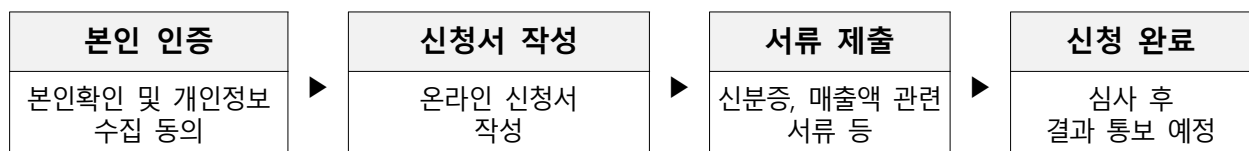
□ 신청기간 : '25. 7. 30(수) ~ 12. 19(금)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페이지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코로나19피해분할상환]을 선택하여 신청

◆ **온라인 지원절차**



□ 전산심사(또는 현장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최종 선정

- (심사항목)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코로나19 시기 경영애로 발생 여부, 상환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 심사

* 평가항목 : 경영애로 사항 유·무, 장기 운영 및 상환 가능성의 정량·정성적 심사

** 단, 총 신청금액이 50백만원 이상이거나 30일 이하 연체 상태에서 신청한 업체의 경우, 현장심사 실시 또는 추가자료 징구 진행

- (최종 선정) ① 코로나19 시기 경영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와 ② 현재 경영 애로는 있으나, 코로나 시기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에 적용되는 제도를 달리하여 최종 선정

신청제도	심사결과	지원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① 코로나19 시기 애로사항 존재 ② 코로나19 시기와 무관한 애로사항 존재	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특례)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 제한사항

- 심사 결과 ① 또는 ②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약정 직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요청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제도 신청전 유의사항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금년도에 한해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상환연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활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계좌를 본 특례지원을 통해 신청할 경우, 지원이 확정되면 잔여 거치기간은 소멸되며, 실행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 * 거치기간 :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본 제도를 통해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에 유의하여 본 제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본 제도 지원 전 상환스케줄 대비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관련

- ① 본 제도는 신청만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②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 ③ 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스케줄 대비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본 제도는 최초 지원결정 후 해당 지원이 종료되기 전까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⑤ 약정 전까지,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약정 직전 수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단기연체자 신청의 경우, 연체료와 미납원금, 이자 등은 신규 체결될 약정 금액에 산입됩니다.

■ 연체계좌 신청 관련

- ①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계좌 보유 상태에서 제도 신청시 연체일수 기산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심사·약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연체료 가산, 신용정보 등록, 관리 등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히 신청하여 주십시오.
- ② 단기연체 신청의 경우, **가산금리는 + 0.4%를 적용받게 됩니다.(정상상환자 +0.2% 가산)**

■ 심사 관련

- ①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지역센터별 신청건수와 심사 여력에 따라 처리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제도 지원결정 이후 약정 체결시 **전자약정서가 연락처로 전송**됩니다. 다만, 단기연체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약정서 작성은 전송 당일 오후 5시 까지 유효하며, 유효시간 내 작성 불가할 경우 해당 약정서는 자동 폐기되고, 다음 영업일에 새로운 약정서를 전송받아 유효시간 내 작성하셔야 합니다.

■ 거치기간 중인 계좌의 신청 관련

- ① **약정 실행시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이 진행**됩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복수의 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 중인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 시점을 조율하시거나 제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② 거치기간중인 계좌를 제외하려면 **약정 전 단계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약정실행 후에는 취소 또는 지원 전 상태로의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③ 제도 신청시 거치기간을 사유로 제외한 계좌는 이후 거치기간 종료 시 통합계좌에 추가 편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에서 상담 가능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02)839-873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서울)동작센터	(02)3482-6686 (02)3482-6687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02)889-9270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부산 울산 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기차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과제로 46SMC 빌딩 6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프라자 1802호	남구, 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052)243-7495	울산 중구 새즈문해거리 28 2층	북구, 중구, 동구(+남구, 울주군)
대구 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군위군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영주공유플랫폼 3층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7층	광산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남 나주시 빚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5 (064)739-9218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서귀포빌딩)	서귀포시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사르망 B동 3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9 (031)677-6188	경기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03호	안성시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031)631-7465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부천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시흥센터	(031)311-2689 (031)311-2690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운프라자 4층 403호	시흥시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031)997-4305	경기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김포시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031)554-5370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인천지역본부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 동구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유성구, 서구, 대덕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홍성군, 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남)아산센터	(041)549-5392 (041)549-5399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아산시, 예산군
	(충남)보령센터	(041)931-4443 (041)931-4448	충남 보령시 흥덕로 22, 2층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강원지역본부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3층 306호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충북지역본부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청주시, 보은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제천빌딩 2층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 영동군
전북지역본부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6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66-0199	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	군산시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남원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경남지역본부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 오션타워 5층(502, 503호)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 밀양시